

코로나 사태 속에서 공동의회 개최에 대한 가이드라인

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각 교회가 감염 방지 대책을 취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있을 줄 압니다. 매년 1 월 혹은 2 월에 각 교회에서 공동 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,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위협으로 모든 교회가 공동의회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총회의 입장에서 각 교회의 공동의회에 대한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오니 공동의회 개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공동의회 개최는 각 교회의 상황 및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, 개최의 판단은 각 교회에 맡깁니다. 각 교회가 그 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최, 또는 연기 및 중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공동의회 개최, 연기, 중지 등에 관한 총회의 지침을 아래에 제시하오니 이것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고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○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경우

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최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, 여러 장소로 나누어서 모이거나 리모트 참여를 독려하는 등, 최대한 3 밀(밀폐, 밀집, 밀접)을 피하시고 시간 단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, 자료 배부에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, 사용 전후의 소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. 또한 리모트 참여 및 위임에 대해 현행 헌법 규정이 없지만, 다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.

- 리모트 참여 및 위임을 인정합니다. 그러나 공동의회 성립 정수는 위임자 수를 비롯한 참석자 수가 정회원의 과반수로 하며, 실제 참석자 수(리모트 참가자 포함)가 정회원 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투표 및 선거를 실시할 경우 리모트 참가자에게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공동의회를 연기하는 경우

지역의 감염 상황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의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연기 기간을 3 월말까지로 하고, 그것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정기공동 의회는 중지하시기 바랍니다.

○공동의회가 중지된 경우

공동의회 각 보고서는 보고서를 배포 또는 송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당회 혹은 제직회의 승인을 받으십시오. 안건 결의에 대한 것은 당회 혹은 제직회에 위임 등의 조치를 취하고, 주요 안건과 선거에 대한 것은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해 주십시오. 예산안은 임시 조치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, 임시 공동의회에서 수정 예산안을 결의 해 주십시오. 또한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의 방법을 취하십시오. 서면 결의의 방법은 당회 혹은 제직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○먼저 서면으로 보고와 결의를 할 경우

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먼저 서면으로 보고와 결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공동의회 각 보고는 보고서를 배포, 또는 송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, 안건 결의 내용은 서면으로 결의를 할 것인지, 당회 혹은 제직회에 위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중요한 안건과 선거는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공동의회 또는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서면결의의 방법은 당회 혹은 제직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